

서울지방병무청 청원경찰 채용 공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등

채용직급	인원	임용(예정)	근무분야	근무기관
청원경찰	1명	'26. 11. 19.(목)	○ 병역판정검사장 안전·질서유지 ○ 병역판정검사장 민원 안내 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서울지방병무청

2. 근거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및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및 제33조(결격사유)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공통) **[최종시험일(2차 면접전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공직선거법」 제266조(결격사유)】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

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57조(결격사유)】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결격사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 따른 당연퇴직(60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확인

다.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 직무분야 경력자 : 직무관련 기관에서 동일분야 직무 경력
 - *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 관련 직무분야 : 경찰, 청원경찰 및 경비·방호업무(보안·경비업체 등)
- ❖ 관련 기관 : 경찰청, 전문경비업체, 민간전문기관 등을 말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기관은 정상적으로 등록(사업자등록)된 기관을 의미
 - * 개인사업자 경력 제외
- 무도단증 소지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별첨1 참조)에서 발급된 것에 한함
 - * 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서 단수가 높은 것으로 인정
- 체력 검증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에 따른 차등 배점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인증서에 한함('25. 9. 4. ~ '26. 9. 3.)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차등배점,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1급 > 2급

- ❖ 정보화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 2012.1.1. 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공 통 】

-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신체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공통 및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으로 판단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이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경력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만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부서, 직책,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주 40시간 등),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 제출
-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첨부 가능
- 근무경력자 : 4대 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계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4. 보수 및 근무시간

구분	내 용
보수	○ 기본급 월 2,133,000원(1호봉 기준, 세액공제 전) * '26년 경찰청 고시금액 -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별도 지급
근무형태 / 시간	○ 주 5일 (월~금),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 근무시간 : 09:00 ~ 18:00 * 상기 근무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 실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조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자격요건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하되, 다만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기준 >

평정요소	평가 기준
발 전 가 능 성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 무 적 합 성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등 적합성·연관성 평가
우 대	직무관련 실무경력, 무도단증,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정보화 자격증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 ① 소통 · 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 · 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 · 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 · 책임 : 청원경찰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중’, ‘하’의 개수에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지방병무청」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26. 9. 1.(화) ~ 9. 3.(목) / 3일간(토·일·공휴일 제외)

- 방문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2층)로 마감일 18:00까지 방문
※ 택배 또는 퀵 배송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우 07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도착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SMS로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공통 서류 (별지 서식)	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서류 총괄표 1부		필수
	2. 응시원서 1부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7.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이 기재된 것	
개별 서류	8.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		해당자
	9.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하단 참조	
	10. 공인 무도단증 사본 1부	○ 가장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1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 인증일자가 1년('25. 9. 4. ~ '26. 9. 3.) 이내인 경우만 인정	
	12.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복수 소지자의 경우 배점이 높은 자격증 1개만 제 출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주 ○○시간)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최근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유효기간이 없는 등 갱신을 요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 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또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실히 기재하되, 필요 시 응시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첨부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비 고
서류전형(1차)	2026. 9. 17.(목)	-	2026. 9. 18.(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임용(예정) : '26. 11. 19.(목)
면접전형(2차)	2026. 10. 1.(목)	별도 통보	2026. 10. 20.(화)	

- ※ 합격자 발표 외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

9. 기타(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우대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 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서류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공무원법」 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여부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는 제출한 원본 서류 등의 반환(‘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험 관리를 위해 제출서류의 사본을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반환기간 : '26. 10. 20. ~ 11. 21.

타.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 하.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2-820-4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서울지방병무청장

【별지 1】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채용분야
	청원경찰

■ 제출서류(총괄표)

- 제출유무란 해당란에 “○” 표시, 번호순으로 집계 1개로 고정 제출
(스테플러 미사용)

번호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1	[별지 2] 응시원서 1부(필수)	
2	[별지 3] 이력서 1부(필수)	
3	[별지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4	[별지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5	[별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6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별지 7]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 (해당자)	
8	[별지 8] 경력증명서(상별사항 포함)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9	공인 무도단증 사본 1부 (해당자)	
10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1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사본 1부 (해당자)	

※ 1부터 6까지 필수 제출, 7~11은 해당자만 선택적 제출

2026. . .

성명 : (서명)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 2】

응시원서

본인은 서울지방병무청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
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
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채용신분	청원경찰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국적명:) ☐ 해당 없음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 전화				

응시표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청원경찰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2026년 월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④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정부수입인지 : 해당 없음

서울지방지방병무청장

【별지 3】

이 력 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 랑당자 기재	응시 분야	청원경찰	성 명	
----------	----------	----------	------	-----	--

나. 응시 요 건 (필 수 요 건)

시 력	(나안 / 교정) 좌 : 우 :
-----	-------------------------

다. 우 대 요 건 (해 당 자 만)

경 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일수	근무 형태	직위	담당업무(상세기재)
	○○○	2012.01.01.~ 2012.12.31.	00개 월00일	주00시간	대리	
무도 단증	단증 이름		단번호	단수		무도단체명
체력 인증서	인증 등급		인증일			비고
자격증	자격증 이름		자격증 취득(발급)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 경력 : 최근경력을 위쪽에, 과거경력을 아래쪽에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하며, 불가피한 경우 2장으로 작성하되 앞, 뒷장 모두 서명 칸을 만들어 서명

【별지 4】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 답장자 기재	응시 분야	청원경찰	성 명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지원동기,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성격,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경력(업적), 생활신조와 가치관, 대인관계, 취미활동, 특기사항, 미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2026.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5】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지원 분야	청원경찰	성명	(서명)
----------	----------	----------	------	----	------

☐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이해

본인이 지원한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히 아는 대로 쓰시오.

☐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해당없을 시 기재불요)

지원 전 근무처에서의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를 적으시오.

- 근무처(부서명) 및 근무기간
- 본인이 담당한 주요 업무실적 및 담당업무 등 구체적 성과, 기여도

☐ 응시직종에 대한 직무수행계획

자신의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적으시오.

☐ 특기사항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한글워드로 작성, 분량은 A4 2장 이내)

【별지 6】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 7】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 예시는 지우고 작성할 것

근무기관 (부서 포함)	근무기간	근무연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근무형태
1. ○○○○ (팀)	2019.X.X ~ 2015.X.XX	XX년XX월XX일	주임		주40시간
	2015.X.X ~ 2014.X.XX	XX년XX월XX일	과장		주35시간
2. △△△△ (팀)	2014.X.X ~ 2012.X.XX	XX년XX월XX일			주25시간
	2012.X.X ~ 2011.X.XX	XX년XX월XX일			
3. △△△△ (팀)	2010.X.X ~ 2007.X.XX	XX년XX월XX일			
총 경력		○○년○○개월 ○○일			

【작성요령】

- ①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 예정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 첨부**
-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2월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⑤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별도 기재**
- ⑥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예-계약직으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관련 직무와 관련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이 경우 심의를 통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8】

경력증명서

기 관 현 황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형태	☐ 국가 혹은 지자체 ☐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법인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의원 등 ☐ 공사 혹은 공단 ☐ 기타()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근무기간	년	월
퇴사일자	년	월	일			
퇴직사유	사유 기재			퇴직일자	년	월
근 무 세 부 내 역						
부서명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위(급)	
~						
~						
상 별 사 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담 당 자	(인)	
				확 인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직인

* 담당업무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경력(상근/비상근,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별지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휴대전화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직무기술서

직무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기관
청원경찰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주요 업무	○ 병역판정검사장 안전·질서유지 ○ 병역판정검사장 민원 안내 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위기대처 능력,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등
-------	---

필요 지식	○ 청원경찰 직무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 ○ 병역판정검사장 및 시설물 방호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 지식
-------	---

응시자격요건(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필수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사람(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 따른 당연퇴직(60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관련 동일 또는 유사직종 경력이 있는 자 ○ 무술 유단자증,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및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참고자료】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60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 「대한크리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연합회 구)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제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국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신무합기도협회는 대한민국합기도연합회로 단체 명칭 변경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